■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5. 8. 21.>

인증번호 제 호

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

상호			(대표자)성명	
주소			사업자등록번호	
인증사항	선박의 명칭		선박의 용도	
	선박번호 또는 호선번호		IMO 번호	
	설비구분			
	적용기술			
	규격 및 수량			
	인증등급			
	특기사항			
인증조건	1.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이 예비인증을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.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			

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「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

210㎜×297㎜[보존용지(1종) 120g/㎡]